

회원관리 규정

제 1 장 목 적

제 1 조 (목 적)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(이하 “연맹”이라 한다)정관 제3장에 의거 회원의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.

제 2 장 회 원

제 2 조 (회원구성) ①연맹의 회원은 정관 제6조에 의하여 구성한다.

제 3 조 (회원가입) ① 회원가입은 입회신청서(회원등록 카드 양식)를 작성하여 입회비와 함께 관할 지역본부에 접수하거나 연맹의 웹사이트(Web Site) 이용 및 절차에 의하여 가입 신청할 수 있다.

② 웹사이트에 가입시 허가증과 자격증을 첨부하여 가입 신청을 하고 가입내용과 일치한지 여부를 연맹에서 확인 후 승인한다.

③지역본부에서의 가입할 때에는 지역본부에서 허가증과 자격증 내용을 확인한 후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사항을 지역본부장의 확인 후 연맹에 서면(전자문서 포함) 보고 하여야 한다.

④회원 가입시에 허가증의 주소지로 지역본부를 구분하며, 허가증의 주소지가 변경될 때에는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를 변경할 수 있다.

⑤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원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에 회원가입 적격자에게는 회원증을 발행해서 본인에게 회원가입을 통지한다.

⑥ 강습회를 수강한 준회원에게는 SWL-ID를 지정하고 아마추어무선국 허가를 취득하면 콜사인으로 변경한다.

⑦ 연맹은 회원가입 부적격자에게는 그 취지를 통지함과 동시에 회원가입신청에 따른 입회금 및 회비를 반납한다.

제 4조 (등록사항) 정회원, 가족회원, 단체회원 및 준회원의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성명 : 단체인 경우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으로 한다.
2. 생년월일 : 단체인 경우는 대표자의 생년월일로 한다.
3. 주소 : 허가증의 주소지로 한다 (단체인 경우도 동일).
4. 회원의 종류
5. 회비의 납입 기간
6. 가입 연월일 (등록 연월일)

7. 아마추어무선국의 허가증과 자격증 사본(단체국은 허가증과 단체국 대표의 자격증사본)
8. 준회원 SWL-ID를 지정하고 아마추어무선국 허가를 취득하면 콜사인으로 변경한다.
9. 등록변경 연월일

제 5 조 (회원징계) ① 다음의 경우에는 정관 제11조 2항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한다.

1. 관련 법규 또는 연맹의 규칙을 위반하였을 경우
2. 연맹의 사업 및 목적을 저해하였을 경우
3. 연맹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
4.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② 징계의 종류는 주의(구두 경고), 경고(시말서 징구), 자격정지 1년, 2년, 3년, 제명으로 한다.

③ 징계위원회는 이사회로 구성하고, 징계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. 징계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, 당사자에게 일시를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제 3 장 회 비

제 6 조 (회 원) 회원은 정관 제6조에 의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, 회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.

1. 정 회원
2. 가족회원
3. 단체회원
4. 준 회원
5. 특별회원
6. 휴면회원
7. 예비회원

제 7 조 (회 비) ①회비의 종류와 금액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비의 종류와 금액 (단위 : 원)

구 분	정회원	가족회원	단체 정회원	준회원
입 회 비	30,000	30,000	50,000	30,000
월 회 비	4,000	2,000	5,000	4,000
평생회비	800,000	400,000	800,000	800,000

- 2. 입회비는 연맹 가입 시 납부하여야 한다.
- 3. 월회비는 자동이체 또는 6개월분 이상으로 선납하여야 한다.
- 4. 가족 회원은 시설자를 제외하고 추가 회원 3인까지 월회비 및 평생회비의 50%를 감액하며 4인 이상에 대하여는 월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
② 평생회비는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가족회원이 평생회원으로 전환 또는 가입 시에는 시설자가 평생회원이어야 한다.

③ 신규 회원가입과 동시에 평생회비를 납부할 경우에는 입회비와 평생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 8 조 (납 부) ① 회비는 연맹 사무총국으로 납부하거나 연맹의 웹사이트(Web Site) 이용 및 절차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, 중도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납부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- ② 회비가 미납된 회원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- ③ 제2항의 회원자격 정지자는 계속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. 단 미납된 회비를 완납시는 계속회원의 자격을 인정하되 입후보자격 (피선거권)은 2년간 제한 한다.
- ④ 회원 회비 미납자는 연맹에서 제공하는 회원의 제반 혜택을 받을 수 없다.

제 9 조 (정회원 및 준회원의 회비면제) ① 신체장애자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정부에서 인정하는 제1급의 장애에 해당되는 회원은 회비를 면제하고, 제2급 및 제3급 장애인인 회원은 회비의 50%를 감면한다.

- ② 연맹 이사회에서 의결된 특별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.
- ③ 제1항의 경우 회비 면제 신청서 및 정부에서 인정한 장애인수첩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정회원 가입 이력이 있는 준회원 및 예비회원은 정회원 재가입 시 입회비를 면제한다.

제 4 장 시 상

제 10 조 (자 격) 시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연맹의 사업, 홍보 및 국제 협력 등으로 연맹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자.
- 2. 아마추어국의 운용이 우수한 자.
- 3. 사회봉사 및 재난통신지원단의 활동사항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.
- 4. 기타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.

제 11 조 (시 상) ① 제10조의 해당자는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거쳐 총회 2개월 전까지 연맹으로 수상자 후보

공적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수상 예정자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시상하며, 정회원 수 300명당 1명씩을 시상하며, 1명은 연맹 총회에서, 추가수상자는 지역본부 총회에서 분리 시상한다. 단, 1. 5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또한 300명 미만인 지역 본부는 1명으로 한다.

2. 유관기관의 표창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표창한다.

③ 제②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사회봉사 및 재난통신지원단의 활동사항이 우수한 개인 또는 단체는 지역본부장의 추천을 거쳐 사례를 모집하여 이사회 심의를 거쳐 1인(단체)을 선정하여 연맹총회에서 봉사상을 시상할 수 있다.

④ 총회 산회 후 수상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시상한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이사회 의결 직후부터 시행한다.

단, 평생회비 폐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.

제 2 조 (개 정)

- ① 2019. 10. 12. 부칙 개정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규정은 2022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준칙)

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이사회 최종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기존 회원에 대한 특례) ① 평생회원 가입 월 기준으로 선납된 월회비는 평생회비에서 정산하여 감액한다.

② 평생회비 납부일 현재 계속 10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하여 평생회비를 600,000원(가족회원: 300,000원)으로 감액한다.

③ 납입한 월회비(입회비 포함) 및 평생회비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사유로도 환급을 요청할 수 없다.